www.sahack.or.kr

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서류

일시 : 2022. 9. 29(목) 11:30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클럽(20층)

대한사립학교장회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 Principals

목 차

정기총회 개최 일정 ····· 3
총회 식순 ····· 4
본회 강령 ····· 5
본회 헌장 ····· 6
주요회무보고 ····· 7

1. 시·도 회장 개선 ····· 9
2. 2021 정기총회 개최 ····· 10
3. 본회 정관변경 및 신규 기본재산 취득 허가 ····· 11
4. 사학회관 별관 리모델링 진행 및 완료 ····· 12
5. 개정 사학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협의 ····· 13
6.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항의 성명 발표 ····· 18
7.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 사립학교 차별 항의 성명 ····· 21
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학교장 제외 ····· 23
9. 대선 및 교육감 선거 관련 대외 활동 ····· 24
10. 교육관계 주요 법령 및 의견 ····· 31
가.「사립학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반대 의견 ····· 31
나.「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의견 ····· 37
다.「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반대 의견 ····· 39
라.「교원지위법일부개정법률안」찬성 의견 ····· 44
마.「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찬성 의견 ····· 46
바.「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반대 의견 ····· 48
사.「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반대 의견 ····· 50
11. 교육부 단체교섭 경과 ····· 54
12. 국가발전 위한 사학자율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 55

13. 개정사학법 헌법소원비 1억 지원 ····· 56
14. 사학홍보영상 제작 및 사학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 57
15. 2022 교육공로표창 시상 ····· 58
16. 2022 모범학생표창 수여 ····· 59
17. 2022 장학사업 시행 ····· 60
18. 농어촌학교 스포츠 점퍼 배포 ····· 61
19. 회지 사학 발생 방식 개편 ····· 61
20. 사학회관 본관 임대현황 ····· 62
21. 시도 특별보조금 및 간행물 판매 보조금 지급 ····· 63
22. 본회 수익사업 현황 ····· 65

심의 안건 ····· 67

1. 임원 선출(안) ····· 69
2. 정관 별지목록2 개정(안) ····· 70

2022 교육공로표창 수상자 명단 ····· 73

2022년도 정기총회 일정표

○ 일　　시 : 2022. 9. 29(목), 11:30～12:30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클럽(20층)

식 순	시간	내 용	비 고
11:00～11:30	30‘	○ 등록 및 안내	로비
1부 개회식(25‘)	2‘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3‘	○ 본회 헌장 낭독	부회장
	20‘	○ 회장 인사말	회장
		○ 2022 교육공로표창 시상	대표자
		○ 개회식 종료	사회
2부 본회의(25‘)	2‘	○ 성원보고 및 개의	사회
	23‘	○ 회무보고	사회
		○ 심의 안건 의결	회장
폐회		○ 폐회 및 해산	사회

총 회 식 순

1. 개회 선언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순직교직원에 대한 묵념

3. 본회 헌장 낭독

4. 개회사

5. 본회의

6. 폐회 선언

◈ 본 회 강 령 ◈

사학의 발전없이

민주번영 못 이룬다

◈ 본회 헌장 ◈

1.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정신을 견지하고 이상의 실현과 신념의 관철에 매진하여야 한다.

2. 사학은 강한 자주성과 함께 상호 긴밀한 유대와 강한 협동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사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4. 사학의 교직자는 부단한 학식연마와 연구실천을 통하여 일반교양과 함께 전문교양을 높여야 한다.

5. 사학의 교직자는 자기 인격완성과 품위향상에 힘쓰며 교직생활에 대한 희열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주 요 회 무 보 고

(2021년 11월 이후)

1 시·도 회장 개선

○ 2021년 11월 이후 각 시·도회는 회원총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신임회장을 선출하였음.

시·도	전 임 회 장		신 임 회 장	
	성 명	학 교 명	**성 명**	**학 교 명**
서울	이재구	건대사대부고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인천	김치문	한국주얼리고	**정구선**	**인하대사대부고**
광주	정호경	광주동신여고	**한문노**	**살레시오고**
울산	노재붕	현대고	**최영철**	**현대중**
경기	오성룡	태원고	**정길현**	**성문중**
충남	최동우	장항고	**박준호**	**온양한올고**
전북	조경희	군산영광중	**안종성**	**배영고**
전남	김홍찬	삼광중	**정회삼**	**예당고**
경북	류세기	경안여중	**김민규**	**포항예술고**
경남	손재호	삼현여고	**조용희**	**신창여중**
초등	우명원	화랑초	**원상철**	**영훈초**

2 2021 정기총회 개최

○ 본회 2021 정기총회가 임원 및 회원 27명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되었음. 주요안건들에 대한 사전 서면결의 및 현장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아래와 같이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원안 통과되었음.

가. 일시 : 2021. 10. 1(금), 11:00
나. 장소 : 대전광역시 대전ICC호텔 크리스탈볼룸
다. 서면결의 및 현장 참석 : 932명(*재적 회원 1,532명)
라. 안건 의결 사항
- 제1호 정관 및 정관별지목록 변경 :
  찬성 922명 / 반대 8명 /기권 2명
- 제2호 현금성 기본재산 처분 및 신규 기본재산 취득 :
  찬성 920명 / 반대 10명 / 기권 2명

2021년 정기총회 참석 현황

시·도	회원수	현장참석	서면의결	참석 합
서 울	306	4	126	130
부 산	108	2	55	57
대 구	87	1	56	57
인 천	43	2	35	37
광 주	67	1	35	36
대 전	46	2	29	31
울 산	15	2	14	16
경 기	212	3	120	123
강 원	30	0	22	22
충 북	39	1	31	32
충 남	67	1	42	43
전 북	115	2	63	65
전 남	76	1	34	35
경 북	148	2	104	106
경 남	157	3	128	131
제 주	16	0	11	11
계	1,532	27	905	932

3	본회 정관변경 및 신규 기본재산 취득 허가

○ 지난해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사립초등교장 회원 자격 인정 및 본회 기본재산 변경·취득 건이 관할청의 심의를 통과하였음. 본회는 이에 따라 작년 11월, 신규 기본재산으로 신갈동 소재 별관을 편입하였으며, 금년 정관 별지목록 변경을 통해 본회 자산으로 기재,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을 예정임.

4 사학회관 별관 리모델링 진행 및 완료

○ 지난해 회원총회 의결에 따라 구입한 본회 별관(신갈동 455-5) 리모델링 공사가 본회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주도하에 지난 8월 최종 마무리되었음. 별관은 임대평수 704평, 대지 250평으로 높은 임대수입이 기대되며, 서울진입로에 위치하여 본회 홍보 및 사학 랜드마크의 기능으로도 활용할 예정. 9월 현재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사무실, 연구소, 병원 등의 입점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

□ 총 예산 : 12억 1천만원

□ 리모델링 범위 : 외관 및 내벽 보수, 창호 설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소방 및 전기통신 공사, 금속 및 도장 공사 등

□ 소요기간 : 2022. 3 ~ 2022. 8

□ 리모델링추진위원회 : 조경희 전 전북회장 외 시도 회장 6인

[본회 사학회관 별관]

5 개정 사학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협의

○ 지난해 8월 개정 입법된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 대해 본회는 지난해 10월 8일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희외와 함께 교육부와 협의를 가졌음.

○ 교육부가 제안한 시행령안 다음과 같음.

□ 사립학교법 53조의2 제11항, 필기시험 의무화 관련 예외조항

①다수 법인이 공동전형 실시할 경우, ②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③건학이념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 교원 선별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70조의 3 제1항,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 관련

① 임용권자가 실시하나 교육감 위탁 가능, ② 응시 결격사유 규정 사전 공지, ③ 채용 관련 사항 20일 이상 인터넷 공개

□ 사립학교법 72조의5 제2항,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 규정

① 자문 사항 : 학교 헌장 및 학칙 제·개정

② 심의사항 : 수업일수, 휴업일, 학교행사, 학생 안전대책 수립

③ 자문 또는 심의사항 : 학운위 위원 정수·선출, 학교발전기금 조성

④ 기타 : 공모 교장 공모방법 및 초빙교사 추천은 학운의 자문 심의대상에서 제외, 학교장은 심의 자문결과에 존중의무가 있으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 보고.

○ 본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안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법

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 준용한 것은 사인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 그리고 학운위의 심의기구화는 학교장의 학사운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므로 각각 수정하라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협의안보다 후퇴하여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시행령을 지난 3월 발표하였음.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	개정(안)	건의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조 항	개 정(안)	건 의 안
	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 2~3호(생 략) 신 설	2~3호(현행과 같음) 4.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21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③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교육청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9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제29조(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학기관 종사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사학기관 종사자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이하	제29조(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학기관 종사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가 해당되며, 사학기관 종사자(교직원은 학교장에게, 학교법인 직원은 이사장에게)는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한다. 다만, 사학

조 항	개 정 (안)	건 의 안
	“정관 또는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정관 또는	기관 종사자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이하 “정관 또는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 등을 제공하거나 고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조 항	개 정 (안)	건 의 안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 항	개 정 (안)	건 의 안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항의 성명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의 교육용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과세 변경안을 발표하였음. 동 시행령안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제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

○ 동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립학교 법인은 이전보다 약 6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추정되어, 사립학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였음. 이에 본회는 한국사학법인협의회 등 5개 단체와 지난해 11. 9,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동시행령 철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12. 28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하였음.

성 명 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즉각 철회하라

1.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2022년부터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면세였으나 이 토지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과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를 하고 있었던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은 모두 합하여, 종합합산과세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논리-이미 진행된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동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망각한 채"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같아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 학교법인의 역할과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조세정책인 것이라 여겨진다.

3. 행안부 안으로 개정될 경우,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마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수익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그 규모는 무려 연간 약 6,000억원 정도로 증세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대학은 1년에 토지세만 약 1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그 만큼 교육에 직접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이 바로 서지 못 하면, 한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일찍이 선각자들은 온 국민이 배워야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큰 뜻으로 개인 재산을 기부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전국 교육 기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사학관련 단체장들은 좌시할 수 없어, 절박한 심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행안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세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국의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평준화 및 무상교육임에도 사립 초·중·고의 교지에 과세한다는 발상은 교육망국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요구되는 출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OECD국가 정도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안정된 교육,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대열에 걸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학의 행·재정에 대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진취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7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 사립학교 차별 항의 성명

○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교직원 학생 심리·정서 안정지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음.

○ 본회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사립학교법을 강제 개정하여 사립학교 인사권과 운영권을 침해하는 교육부가 정작 지원에 있어 사립학교를 배제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성 명 서

사립학교 차별하는 과밀학급 해소 지침 철회하라!"
- 공립학교 학생만 학생이고, 사립학교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 -

1.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실행을 위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지난 9. 8일 개최하고 조속한 교육회복을 위해 하반기 중 총 5조 3천 619억을 사용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2.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 학생 및 교사 심리 정서 안정화, 과밀학급 해소 등의 정책은 장기간 정상적인 교육을 펼칠 수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누구나 환영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3.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청이 발표한 실행안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있어 **사립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라 증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이는 이미 지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있어 공립은 개축까지, 사립은 리모델링만 허용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재작년부터 시행된 '학교공간 혁신사업'의 경우 사립 또한 증·개축이 허용되었음을 고려하면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5. 정부 여당은 지난 8. 31일 일방적으로 반헌법적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며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인사권 운영권을 침탈하면서 정작 지원 정책에서는 사립학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6. 과연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공공성이 사립학교 법인들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사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그 종사자들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과밀학급 문제는 공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립학교 또한 심각히 겪는 문제이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안심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7. 그러나 교육당국은 예나 다름없이 사립학교를 철저히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사립학교는 사적 재산이라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강제 입법했던 논리는 편향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인가.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교육의 진정한 공공성 회복을 촉구한다.

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학교장 제외

□ 중대재해특별법 입법 경과

○ 2020. 6. 11 ~ 12. 14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학교 및 학교장 포함) 처벌법안 발의(강은미 의원안 등 5개 법안)

○ 2020. 9. 22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김미숙 외 10만명)

○ 2021. 1. 8 법사위 의결 및 본회의 통과, 1. 26 법률 공포, 2022. 1. 시행

□ 본회 대응

○ 본회는 동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있는 학교의 경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법적용인데다, 이미 교육시설안전법과 학교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입법임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성명서 발표 및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학교가 제외되는 성과를 얻었으나 중대산업재해에는 여전히 포함된 채 법률이 통과되었음.

○ 본회는 법률 공포 후 한국교총과 연대하여 학교장이 학교경영 책임자일 수 없으므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21. 1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학교장이 적용대상에서 최종 제외되었음.

9 대선 및 교육감 선거 관련 대외 활동

○ 본회는 지난 3월과 6월 제20대 대선 및 제8대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대선후보들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본회 및 사학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전달하였음.

□ 내용 : 본회 및 사학현안 전달
□ 대상 : 윤석렬 후보 캠프 및 각 교육감 후보 캠프
□ 참여 : 본회 회장 및 사무총장

※붙임 : 사립학교 현안 및 건의사항

사립학교 현안 및 건의 사항

연번	제목	현황	개선 방향
1	교장 공모제 실시의 차별 문제	- 사립교장과 달리 공립교장은 1회 중임 기한 종료 후에도「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되는 횟수는 제한받지 않음 -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명백한 차별.	사립의 교장 공모제를 제도화하여 중임 이후 조기 퇴직하게 되는 사립 교장도 공립교장과 동일한 대우.
2	사립학교 원로교사제 실시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에 따라 공립 교장 중 정년 전 퇴임하는 사람 중 희망자는 원로교사로 임용해 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립학교에는 원로교사제 실시의 근거 규정이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아 정년 전 퇴임 교장이 원로교사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인의 임용 결정이 없으면 당연 퇴임이 불가피한 실정.	사립에도 원로교사제 법제화해 정년 전 퇴임 교장 배려
3	초빙형교장제 사립교 출신 차별 해소	-현재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중 초빙형 공모(일반학교 대상)는 교장자격 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에게만 기회 허용 -사립의 교장 역시 공립교장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사립 교장에도 공립 일반학교에 대한 '초빙형' 공모교장 응모 자격을 부여
4	사립 사무직원에 대한 서훈 차별 해소	현재 사립 사무직원은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상훈법」제14조에 따라 근정훈장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사립의 사무직원도 퇴직자 정부포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

		한정되어 있음. - 사립 사무직원 역시 국·공립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복무·보수 등도 공무원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받고 있는데도 정부포상 대상에선 제외되어 큰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	
5	국가배상법 적용의 차별 해소	-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시, 공립 교원은「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데 비해, 사립 교원은보다 불리한「민법」의 적용을 받음. - 이에 따라, 사립 교원은 자신의 직무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교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공립 교원의 경우 중과실만 아니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신 배상책임 부담. 사립교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법 적용을 받고 있어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사립 교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도록 제도 개선
6	학교장 퇴임일 적용 차별 해소	공립교장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학기 중 임기만료라 하더라도 학기말인 8월 31일 혹은 2월 말일을 임기만료일로 하고 있음 - 그러나,「사립학교법」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립교장은 학기 중 임기만료일 경우 법인의 재임용 결정이 없으면 그 즉시 퇴임이 불가피 -위 규정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사정은 사립	사립학교 교장도 학기 중 퇴임할 경우, 임기만료라 하더라도 8월 31일 혹은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할 수 있도록 배려

		학교라 하여 다를 바가 없는데도 공·사립 교장 간의 퇴임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	
7	농산어촌 소규모 사립학교의 자율 해산 지원 규정 복원	현재 전국 군단위 이하 소규모 사립학교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극심한 학생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 폐교 상황이 임박한 실정 - 학교 스스로의 자율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 규정이 없어 학교의 유지도, 해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근무 의욕 및 사기 저하, 학부모들의 전학 심리 고조 등 교육환경도 악화돼 가는 실정	농산어촌 소규모 사립학교의 자율적 해산을 유도하기위하여 2006.12. 31. 일몰된 「사립학교법」제35조의2의 규정을 복원
8	공·사립 및 학교법인간 교사 파견 제도화	사립학교는 교사의 전보, 전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사 특성 상 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과원교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 - 이로 인해 교육재정의 낭비가 유발되고 필요한 교과의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등 수업 결손 발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마저 침해받는 실정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해소 및 이에 따른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임용권자 간 혹은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 간 이루어지는 교사 교류(파견 등)를 제도화
9	초등돌봄 운영 방식 주체 조정	교육과 돌봄은 영역이 다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임.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이 당연시 될 때 교육이라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될 우려 돌봄을 단순히 아동 보호 기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휴식에서 학습 취미활동까지 의미있는 활동으로 확장. 향후 점진적으로	초등 돌봄 운영 방식 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

		돌봄 장소를 학교가 아닌 인근 별도의 돌봄 시설 건립 또는 활용이 필요	
10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재검토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는 옳으나 아래와 같은 제도 정착 여건 및 현실적 세부 내용 마련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충분한 교사 수급 계획 ②다양한 수업 질 제고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③성취평가제 신뢰성 확보위한 평가방식 ④지역간 학교 환경 및 인프라, 교육격차 해소 ⑤대입전형과 연계를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 정착 및 시행 위한 세부 내용 및 제도 완비
11	학교 고문노무사제 도입 지원	최근 학교 현장에 급식, 돌봄, 방과후교육 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기존 교직원외, 공무직,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들의 복무, 인사, 처우 및 노조와의 갈등 상황에서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고문노무사 지원 필요함.	학교 고문노무사 채용 및 유지를 위한 지원
12	자율형 사립고 제도의 지속적인 보장	다양한 교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자사고 제도의 일관적 운영 -자율형 사립고의 독자적 학생선발권 허용 방침 확인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시, 편향적 평가방식 철폐, 공정하고 균일한 평가 방식 마련	자율형 사립고 운영의 자율성 안정성 보장. 공정한 평가 방식 도입
13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 유도·지원	○신도심 지역의 학교 수요 자리에 공립학교 신설 대신 노후화된 사립학교 이전 적극 유도	구도심 사립학교 신도심 이전 통한 교육재정 절감 및 교

		- 학교 통폐합 효과 발생, 교육재정 절감, 학생배치 효율화,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등의 효과 발생 ○학생 수 격감의 사립중학교를 자진 폐교할 경우 그 교육용지 처분 재산을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인정 - 사립학교의 재정 자립도 향상, 사립학교 지원 부담 감소	육격차 해소
14	사학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체제 구축	○사학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교육감 직속 구성 ○ 실무적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팀'계의 설치 사학 현장 분쟁의 합리적 해결 ○ 현장 분쟁에 대한 즉시 대응체제 구축 ○ 학생지도를 위한 법인 및 학교의 정당한 권리·의무 관계 적극 보호	교육발전을 위한 사학지원팀 신설
15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국가 부담	사립중등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에도 불구 각 지자체는 학교법인에 법정부담금을 그대로 부과하고 있음. 실상 국가는 사립중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계상해 지자체에 교부, 지자체가 교부받은 법정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환해 사용하는 실정임.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일정액 이상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립중등 법인에 대해 미납 금액만큼 학교운영비 삭감하는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부실 및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사립중등학교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과 제외를 명문화함으로서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하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립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누리도록 보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개정)

16	사립학교 이사장 4대 보험 적용	사립학교 경영자인 이사장은 사재를 헌사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한 데 이어, 학교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음. 그러나 그 노고와 공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학교법인 이사장의 급료는 법인회계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정부담금도 원활히 납부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의 사립학교법인이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실상 무보수로 봉직하고 있는 것임.	사재를 출연한 교육자에 대한 예우, 교육 및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대우(4대 보험 및 일정 수당 지급)을 학교 교비에서 지출되도록 조치 필요.
17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감축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적극적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재정을 논할 것이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방역 환경 등의 시설 개선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메타버스 교육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 강화 등을 고려, 현재 수준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현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다기능 효율적 인재 양성을 위해 현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필요.
18	사립학교법 재개정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및 일부개정령에 대해 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개정 필요	헌법정신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10 교육 관계 주요 법령 및 의견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

○ 사립학교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지난 2. 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동 시행령은 지난 10월 교육부와 협의 당시 제출된 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필기시험 의무화 관련 예외조항 중 '다수 법인 공동전형 실시' 조항이 누락되었음.

○ 본회는 동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지난 해 12. 28일 붙임과 같은 반대 의견을 교육부 및 국무총리 산하 규제조정실에 제출하였으나, 2. 8 국무회의를 최종통과하였음.

※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 제21조의 3항, 필기시험 의무화 관련 예외조항

①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②건학이념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 교원 선별하는 경우

□ 제21조의 2,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 관련

① 임용권자가 실시하나 교육감 위탁 가능, ② 응시 결격사유 규정 사전 공지, ③ 채용 관련 사항 20일 이상 인터넷 공개

□ 제29조,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규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수 정>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와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부합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모법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등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예외규정 ③항에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를 교육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제21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같은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수 정>	-사립학교의 자주성 및 사무직원과 학교법인 간의 사적 고용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개전형의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임용권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형결과 등의 공개 여부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국가가 이의 공개를 강제 규정한 것은 사학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며, 사립학교법에 그러한 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		조항이 없으므로, 이의 규정은 위법한 것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사학기관 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 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반 대>	- 사립학교법인 및 종사자가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입법 규제임. • 모법 제72조의5 제2항 제1호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9조 1호, 2호, 3호, 4호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의 범위와 '직무관련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제6호, 제7호로 학교정관을 통해 주식, 지분 등의 비율 범위와 직무관련자의 기타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자율적 사학운영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며, 학교법인이 규정하기 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		적절한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견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12. 28 소규모 사학 통폐합 지원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음. 동법은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을 유도·장려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적절하나 2006년 일몰된 농산어촌소규모 사학 해산 특례 규정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임. 본회는 이에 대한 붙임과 같은 수정 의견을 지난 1. 12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의안명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발의 : 2021. 12. 28(의안번호 2114132호)

□ 주요내용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규모 사학 통폐합 장려금 지원

□ 법안 진행상황 :

○ 9. 15 현재 교육위 계류 중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43조의2(각급 학교 간 통폐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학교와 통폐합(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되었던 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	<수 정>	-1997년 신설되어 2006년 12월 31일 일몰 폐지된 '소규모 사학 해산특례 조항'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음 • 현재 학령인구(중등)는 동 조항의 입법 당시보다 약 40% 격감되어, 그 감소 정도가 더욱 심해진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입법이 시급한 실정인 바, 동법 개정안의 제출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1997년 입법된 '소규모 사학 해산특례 조항'은 해산장려금 지원을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도 포함한 반면,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금의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었던 재산'으로 한정하여 통폐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수정을 바람.

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 12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본회는 이에 대해 동법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을 우려, 반대의견을 지난 1. 24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의안명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발의 : 2022. 1. 12(의안번호 2114363)
□ 주요내용 : 개방이사추천위원 및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임명 제한 규정 강화
□ 법안 진행상황 :
  ○ 9. 15 현재 교육위 계류 중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14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u>정하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u> ---------- ---------- ---------- ---------- ---------- -----.---------- ---------- ---------- ----------	반 대	- **개방이사추천위원 자격 관련** ● 개방이사 제도 취지는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사인이며, 사법인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사학의 인사권 제한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이사회 구성의 4분의 1이 개방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 더해 개방이사추천위원의 구성에 다시 전·현직 임원을 배제함으로써 추가로 제한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가 임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		으로 활동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를 엄격히 배격함으로서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6의2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2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공무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용은 물론 학교법인 임원으로도 임명이 가능한데, 개정안처럼 학교법인 임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위의 죄를 범하고 똑같이 형이 확정된 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공무원과 학교법인 임원이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직무수행상 청렴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겠음. - 임명의 제한 관련 • 개정안은 또한 사립의 학교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를 학교장 임명 제한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위의 임원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은 동일한 죄를 범해도 2년만 지나면 다시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고 사립 학교장으로도 임명될 수 있는 것인데, 사립 학교장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행위 ⑦ (현행과 같음)		다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초과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공무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사료됨. ● 개정안은 또한 사립 교원의 임명 제한사유로 공·사립 교원 재직기간 중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현저한 부당'이나'중대한 장애' 등의 용어는 대단히 모호한 표현으로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 되거나 해석을 자의적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큰바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술되지 않으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의견

○ 본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월 제출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 회원의 권익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붙임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의안명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발의 : 2022. 1. 12(의안번호 2114427)
□ 주요내용 : 교원 처우 및 보수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법안 진행상황 :
  ○ 9. 15 현재 교육위 계류 중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찬 성	-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반영한 적절한 보수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승진시 보수체계 변동이 거의 없는 등 타 직렬에 비해 처우개선 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② 교원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교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이내 2.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3.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현재 학교에 부과되는 행정업무 부담은 늘어만 가는 상황이며, 특히 교감·교장 등 관리자의 경우 고교학점제, 미래학교 전환 등의 영향으로 참여·운영해야 하는 학교 내 공식 위원회만 27개에 달하는 등 그 업무가 폭증하는 현실임. -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재가 마련되지 못한 것은 교원의 보수결정 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교원보수위원회' 신설을 규정한 동법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며 찬성함. - 교원보수위원회를 통해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회 구성시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는 당사자인 교장·교감 직급을 우선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교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배정해 주시되, 보수체계를 교육공무원에 준용하는 사립학교의 실정을 반영 사립교원 또한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

마.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의견

○ 본회는 지난 5. 18일,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가 적용됨을 고려하여 교원단체 역시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붙임과 같은 찬성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음.

□ 의안명 :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 입법발의 : 2022. 5. 18(의안번호 2115549호)

□ 주요내용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 법안 진행상황 : 9. 15 현재 교육위 계류 중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13조의2(교원단체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단체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교원단체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찬성	○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 교원은 교육기본법 제15조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근거한 교원단체는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교섭·협의하도록 되어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에 교원의 결사의 자유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의한 교섭·협의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봉급의 손실 없이 임용권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와 교원단체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원단체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교원단체 전임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두텁게 보장하여,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 특히 최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원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려 하는 바, 교원단체 역시 동일하게 전임자를 배치하고,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부여하여 교원 지위향상과 복지,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며 찬성함.

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 지난 4월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 등은 교육부장관이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 기준에 학생 및 학급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본회는 이 법안에 대해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상이하고 과대학급 기준도 미비된 시도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법안 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 특히 현재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 축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전용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동 법안이 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임.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단체인 본회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함.

□ 의안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발의 : 2022. 4. 15(의안번호 2115298호)

□ 주요내용 : 통일된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생 및 학급수를 반영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법안 진행상황 : 9. 15 현재 교육위 계류 중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	수정	○ 현재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다르며 과대학급은 20명~40명 초과까지 다양함.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전북·전남·경남은 과밀학급 및 과대학급 기준이 없으며, 세종·경기·충남은 과대학교 기준이 없는 실정임. 과년도

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⑥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 학교급별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탄희의원 또한 비슷한 취지로 과밀학급 기준을 20명으로 두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적정수'로 조정되었음. ○ 동 법안이 과밀학급 기준을 세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이 법안으로 인해 통폐합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 학생들은 교육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도 있음. ○ 모든 학생들의 동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생 학급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직원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위한 적정 교직원을 우선 두고 동 법안의 취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 지난 7. 27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의원 외 11인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및 보호하고 학생이 학교 구성의 주체로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본회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4를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 운영 및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성없는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는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학교운영과 학생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의안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발의 : 2022. 7. 27(의안번호 2116688호)
□ 주요내용 :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
□ 법안 진행상황 : 9. 15. 현재 교육위 계류 중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견	사 유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학생 대표, 교원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대>	○동 개정안은 학생 자치활동 보장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입법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통해 학생자치기구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를 통해 학생 대표가 학

③ ----------시·도의 조례로-----. 다만,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의 조례로------.		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실제 이와 관련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견개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학생 자치와 민주적 의견개진권 보장은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 개정안은 '자치'와 '민주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아직 미성숙하고 비전문적인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학사행정과 교육과정 운영, 예결산 등의 경영분야까지 폭넓고 전문적인 것을 감안하면 전문성없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의과정의 효

		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학교장의 학교운영과 학생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림.

11 교육부 단체교섭 경과

○ 본회는 본회 회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교육부 협상을 한국교총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2022년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본회는 금년부터 교섭위원에 본회 회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 합의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교육부와 교섭을 실시할 예정임.

□ 2021년 교육부 단체교섭 본회 제안 5개안 경과

① 사립 교직원 동일기관 직원 경력 100% 인정(합의)

② 사립학교장 퇴임 기준일의 학기말일 적용(불가)

③ 사립 교원과 교육공무원 간 교사 교류 제도화(합의)

④ 사립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명퇴 수당 지원(불가)

⑤ 사립 교원에 대한 교육부 신분증 발급(불가)

12 국가발전 위한 사학자율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 본회는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함께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고,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지난 2. 16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동 토론회는 국회교육위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실이 주최하였으며 국회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사학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하였음.

가. 주 제 : 국가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

나. 주 최 : 국회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

다. 주 관 : 본회 및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라. 일 시 : 2022년 2월 16일(수) 14:00~16:30

마.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바. 내용 :

	제 목	발제자 및 토론자
발제	1.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신택수 명지대 교수
	2.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	이명웅 변호사
토론	국가주도 교육과 사학의 자율성 훼손 문제	이강년 대전대신학원 이사장
	국가주도 교육의 함정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토론회 자료집 본회 홈페이지 참조

13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비 1억 지원

○ 본회는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반헌법적, 위법적 사항들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헌법소원 경비 1억원을 지난 1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지원하였음.

○ 동 헌법소원(2022헌마350)은 지난 6. 14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으며 본회는 이와 별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사립학교법 헌법소원문 본회 홈페이지 참조

14 사학홍보영상 제작 및 사학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 본회는 국가 교육에 대한 사립학교의 헌신과 공로, 우수성을 적극 알려 사학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학홍보영상을 제작, 지난 2월 말 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 활용을 목표로 전 회원교에 배부하였음.

□ 제 목 : 사학홍보영상 제작
□ 주 관 : 사학홍보영상제작위원회(부회장 1인, 이사 2인, 전문가 1인)
□ 제작기간 : 2021. 12 ~ 2022. 1
□ 제작업체 : 228필름

○ 한편 본회는 사학홍보영상 제작과는 별도로 사립학교 구성원의 사학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사학 바로알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사학홍보영상제작위원회 심사로 아래와 같은 입선작을 선정하였음.

□ 행사명 : 사학 바로알기 영상 공모전
□ 참여대상 : 본회 회원교 재학생 및 교직원
□ 후원 :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NHN에듀
□ 기간 : 2021. 12. 1 ~ 12. 31(심사 : 2022. 1. 1 ~ 15)
□ 수상 :

시상	대상자	상금 및 부상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상(2위)	백산고 (전인성 학생 외 4명)	80만원, NHN에듀 후원 부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상(3위)	상지여고 (박효인 학생 외 4명)	40만원, NHN에듀 후원 부상

15 2022 교육공로표창 시상

○ 2022년 교육공로표창 수상자가 교육공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1일 최종 확정되었음(수상자 명단 별첨). 금년부터 단체상은 본회 수익사업에 대한 각 시·도회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두 분야로 나눠 시상하며, 사학공로상 및 모범교직원상은 2022-2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훈격을 높여 패 대신 훈장을 시상하기로 하였음.

가. 교육공로표창 종류별 개정 명칭 및 수여대상

기존 명칭	**개정 명칭**	대 상
사학공로상	**태극장**	본회 회원
특별공로상	**청록장**	본회 회원 및 외부인사 회원교교직원
모범교직원상 근속상	**백록장**	회원교 교직원 본회 직원

나. 각 부분별 수상 인원

ㅇ태극장 : 대원고 권영근 교장 외 121인

ㅇ백록장 : 명덕외고 장상섭 교사 외 14인

ㅇ청록장 : 김치문 교장

ㅇ단체상 : 각 부분 4개 시·도회

교무수첩 분야			심리검사&OMR 분야		
순위	시도	격려금	순위	상금	격려금
1위	경북	300만원	1위	대전	150만원
2위	경기	250만원	2위	경북	100만원
3위	부산	150만원	3위	경남	50만원
4위	대구	50만원	4위	인천	20만원

※격려금 총액 : 1천70만원(*2021년 6백만원)

16 모범학생표창 수여

○ 본회는 지난 5월 아래와 같이 회원교 모범학생을 선정, 해당 학생에게 상장을 송부하였음.

각 시·도별 수상 현황

구분 / 시·도	회원교수	추 천 학교수	수 상 학생수	구분 / 시·도	회원교수	추 천 학교수	수 상 학생수
서울	312	226	429	충북	39	24	40
부산	114	45	80	충남	79	41	65
대구	86	70	130	전북	116	44	66
인천	44	29	50	전남	80	40	59
광주	68	37	68	경북	168	102	157
대전	45	43	68	경남	159	70	98
울산	17	10	17	제주	16	9	19
경기	220	148	249	초등	66	34	62
강원	34	22	31	계	1,663	994	1,688

17 장학사업 시행

○ 2022년 본회 장학사업이 시·도 회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 선발 장학생은 총 195명이며, 지급 총액은 63,400,000원임.

- 장학금 총액 : 63,400,000원
- 지급일 : 8월 31일
- 장학금 지급 내역 : 63,400,000원
  - · 중학생 : 200,000원 × 73명 = 14,600,000원
  - · 고등학생 : 400,000원 × 122명 = 48,800,000원

◎ 2022년도 시·도별 장학생 현황 ◎

구분 / 시·도	중 학 교	고등학교	구분 / 시·도	중 학 교	고등학교
서 울	5	10	충 북	4	5
부 산	4	11	충 남	0	0
대 구	4	12	전 북	6	8
인 천	2	6	전 남	4	3
광 주	3	3	경 북	13	15
대 전	5	10	경 남	7	11
울 산	2	2	제 주	1	1
경 기	11	21	초 등	0	0
강 원	2	4	계	73	122

18 농어촌학교 스포츠 점퍼 배포

○ 본회는 농산어촌 학교 복지 지원을 위해 스포츠 점퍼 약 2,000벌을 배포하였음. 본 행사는 사단법인 독도협회 및 ㈜화선테크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지역 사무국 및 일선 회원교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12월 배포를 완료하였음.

19 회지「사학」발행 방식 개편

○ 본회 회지 사학의 발행 방식이 2022-2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될 예정임. 1976년 창간한 회지 사학은 그간 사무처에서 직접 발행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급격한 IT사회 진입으로 인한 종이책 외면 현상, 투입 예산대비 저조한 열독률, 역사에 비해 낮은 인지도 및 효용성 등으로 전향적인 개편이 요구되어 왔음.

20 본관 임대 현황

○ 본회 사학회관 본관(종로구 사직동) 임대 현황은 아래와 같음. 본회는 지난해 본관의 장기 미임대 공간을 해소하고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입주 환경 및 관리 방식 개선을 목표로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2021. 10~12월,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본회는 이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애로사항을 청취, 임차인들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리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사이트 광고 및 주변 부동산 정기 방문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본회 본관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였음. 그 결과, 2022년 9월 현재 전 호실이 임대되는 성과를 얻었음.

층	업체	면적(㎡)	임대관리비(원)
지하 2층	종로청운	297.52	4,450,000
지하 1층	빛짜	49.58	2,995,000
101호	종로청운	59.50	1,224,000
102호	대한콘설탄트	198.34	3,900,000
201호	대한콘설탄트	59.50	1,080,000
202호	대한콘설탄트	297.52	5,220,000
301호	나나앤컴퍼니	59.50	1,224,000
302호	대한콘설탄트	297.52	5,220,000
501호	이유엠엔씨	59.50	1,044,000
502호	대한콘설탄트	297.52	5,400,000
601호	제이엘커뮤니케이	59.50	1,080,000
602호	대한콘설탄트	297.52	5,400,000
701호	본회사무실	297.52	-
702호	서울시교장회	59.50	-
801호	사회공헌재단	59.50	1,224,000
802호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99.17	1,890,000
803호	경주배씨대종회	109.09	1,914,000
805호	머니투데이/이로운넷	89.25	1,836,000
901호	그로티	59.50	1,224,000
총액			46,325,000

21 시도 특별보조금 및 간행물 판매 보조금 지급

○ 본회 시·도 특별보조금과 간행물 판매 보조금이 지난 1월 및 8월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음.

가. 2022 사업비특별보조금 지급

(단위 : 원)

	회원수	기준금액	회원수별 차등	간행물보급액X2%	2차 판매수수료	계
서 울	298	4,000,000	2,236,000	1,149,000	234,534	7,619,534
부 산	111	4,000,000	833,000	883,000	223,770	5,939,770
대 구	87	4,000,000	653,000	939,000	446,560	6,038,560
인 천	48	4,000,000	360,000	410,000	525,716	5,295,716
광 주	66	4,000,000	495,000	383,000	131,472	5,009,472
대 전	43	4,000,000	323,000	897,000	540,568	5,760,568
울 산	15	4,000,000	113,000	228,000	81,484	4,422,484
경 기	215	4,000,000	1,614,000	1,659,000	554,614	7,827,614
강 원	32	4,000,000	240,000	269,000	362,238	4,871,238
충 북	39	4,000,000	293,000	498,000	369,016	5,160,016
충 남	66	4,000,000	495,000	470,000	540,916	5,505,916
전 북	115	4,000,000	863,000	745,000	427,016	6,035,016
전 남	76	4,000,000	570,000	293,000	269,076	5,132,076
경 북	148	4,000,000	1,111,000	1,548,000	630,178	7,289,178
경 남	158	4,000,000	1,186,000	957,000	777,942	6,920,942
제 주	16	4,000,000	120,000	126,000	0	4,246,000
초 등	66	4,000,000	495,000	163,000	489,240	5,147,240
계	1,599	68,000,000	12,000,000	11,617,000	6,604,340	98,221,340

나. 2022 간행물 판매 보조금

	회원수	1차 보조금 (회원*30,000)	교무수첩	보 조 금	△ 회 비	지급액
서 울	309	9,270,000	5,259,000	14,529,000	△ 9,270,000	5,259,000
부 산	109	3,270,000	4,032,000	7,302,000	△ 3,270,000	4,032,000
대 구	88	2,640,000	3,892,500	6,532,500	△ 2,640,000	3,892,500
인 천	49	1,470,000	1,693,500	3,163,500	△ 1,470,000	1,693,500
광 주	67	2,010,000	1,437,000	3,447,000	△ 2,010,000	1,437,000
대 전	47	1,410,000	1,614,000	3,024,000	△ 1,410,000	1,614,000
울 산	14	420,000	795,000	1,215,000	△ 420,000	795,000
경 기	226	6,780,000	7,891,500	14,671,500	△ 6,780,000	7,891,500
강 원	32	960,000	1,272,000	2,232,000	△ 960,000	1,272,000
충 북	39	1,170,000	1,444,500	2,614,500	△ 1,170,000	1,444,500
충 남	67	2,010,000	1,459,500	3,469,500	△ 2,010,000	1,459,500
전 북	115	3,450,000	2,188,500	5,638,500	△ 3,450,000	2,188,500
전 남	77	2,310,000	1,015,500	3,325,500	△ 2,310,000	1,015,500
경 북	147	4,410,000	5,749,500	10,159,500	△ 4,410,000	5,749,500
경 남	159	4,770,000	3,951,000	8,721,000	△ 4,770,000	3,951,000
제 주	16	480,000	526,500	1,006,500	△ 480,000	526,500
초 등	66	1,980,000	1,030,500	3,010,500	△ 1,980,000	1,030,500
합 계	1,627	48,810,000	45,252,000	94,062,000	△ 48,810,000	45,252,000

22 본회 수익사업 현황

2022. 1~9월 본회 수익사업 현황이 아래와 같이 집계되고 있음. 올해 본회 수익사업은 전반적으로 약진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본회는 판매율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임.

◎2022년 수익사업 현황◎

(2022. 9. 15 현재)

시도	교무수첩		심리검사		전산소모품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서울	83	52,335,000	4	1,425,600	2	880,000
부산	64	40,305,000	5	1,920,700	1	264,000
대구	48	35,190,000	5	2,941,400	2	5,645000
인천	22	14,580,000	9	5,282,400	0	0
광주	26	16,980,000	3	437,800	0	0
대전	29	16,905,000	5	1,614,800	2	1,485,000
울산	12	6,720,000	1	191,400	0	0
경기	108	70,800,000	11	4,754,100	4	4,798,000
강원	18	8,100,000	5	3,938,500	3	1,419,000
충북	25	12,975,000	8	2,084,100	1	209,000
충남	36	15,375,000	12	4,186,400	3	682,000
전북	44	21,405,000	14	3,685,000	5	8,837,000
전남	17	6,585,000	7	2,613,400	4	4,753,000
경북	111	55,185,000	19	5,650,100	23	12,762,000
경남	65	35,055,000	21	8,124,100	5	1,035,000
제주	9	6,300,000	0	0	0	0
기타	1	1,050,000				
계	718	415,845,000	129	48,849,800	55	42,769,000

심 의 안 건

의안번호	총회 제22-1호
의결연월일	2022. 9. 29

임원 선출(안)

가. 의결주문 :

2022. 3. 31부로 결원된 임원 6인(이사 3명, 감사 3명)을 각 시・도회의 추천을 받은 아래와 같은 후보자들로 선출한다.

나. 신임임원 후보자

직위	시도	성명	소속교	임기
이사	서울	최진원	강서고	~2026. 3. 31
	경기	김세흠	대신고	
	경북	박성수	경안여중	
감사	서울	강병희	선정고	~2024. 3. 31
	대전	윤석규	호수돈여고	
	강원	지창욱	상지여중	

※본회 관련 규정

- 정관 제11조 ③항(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정관 제132조 ①항(임원의 선임)

  <u>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u>

의안번호	총회 제22-2호
의결연월일	2022. 9. 29

정관 별지목록2 개정(안)

가. 의결주문 :

본회 정관 별지목록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안이유 :

2021년 11월 본회 별관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본회 정관 별지목록2 기본재산 목록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부동산 기본재산으로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고자 함.

※붙임 : 정관 개정(안) : 별지목록2

정관 개정(안) : 별지목록2

□ 신구조문 비교

현재의 기본재산 (개정 전)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 10월 26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부동산(대지)	360.3㎡	145,862,400	
부동산(건물)	3,220.8㎡	372,890,000	
예금(현금)		**7,524,444,673**	**부동산 매각액(아파트)**
예금(현금)		556,332,673	교부금 원금
합 계	3,581.1㎡	8,599,529,746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종 별	수량(지적)	평가액(원)	비 고
부동산(대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3	360.3㎡	145,862,400	
부동산(건물)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3	3,220.8㎡	372,890,000	
예금(현금)			**7,524,444,673**	**부동산 매각액(아파트)**
예금(현금)			556,332,673	교부금 원금
합 계		3,581.1㎡	8,599,529,746	

현재의 기본재산 (개정 후)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 9월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부동산(대지)	360.3㎡	145,862,400	
부동산(건물)	3,220.8㎡	372,890,000	
부동산(대지)	**826.98㎡**	**6,819,828,268**	
부동산(건물)	**2,331.27㎡**		
부동산(도로)	**43.0㎡**		
예금(현금)		**1,260,949,078**	
합 계	6,782.37㎡	8,599,529,746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22년 9월 현재기준)

재 산 명	종 별	수량 (지적)	평가액(원)	비 고
부동산(대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3	360.3㎡	145,862,400	
부동산(건물)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3	3,220.8㎡	372,890,000	
부동산(대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317**	**826.98㎡**	**6,819,828,268**	
부동산(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317**	**2,331.27㎡**		
부동산(도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55-40**	**43.0㎡**		
예금(현금)			1,260,949,078	
합 계		6,782.37㎡	8,599,529,746	

2022 교육공로표창
수상자 명단

태극장(사학공로상) 수상자

제호	지역	교명	성명	직위
제22-01호	서울	대원고등학교	권영근	교장
제22-02호	서울	덕성여자고등학교	양승영	교장
제22-03호	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박현숙	교장
제22-04호	서울	동북고등학교	조임상	교장
제22-05호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이진승	교장
제22-06호	서울	배문고등학교	권경주	교장
제22-07호	서울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남경태	교장
제22-08호	서울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최형선	교장
제22-09호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김선복	교장
제22-10호	서울	선정고등학교	강병희	교장
제22-11호	서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정연	교장
제22-12호	서울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정숙	교장
제22-13호	서울	은성중학교	윤미영	교장
제22-14호	서울	인창중학교	김영배	교장
제22-15호	서울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이병배	교장
제22-16호	서울	진선여자고등학교	방건희	교장
제22-17호	부산	금정전자고등학교	김상률	교장
제22-18호	부산	금정중학교	권장석	교장
제22-19호	부산	대광고등학교	김효상	교장
제22-20호	부산	덕문여자고등학교	곽경희	교장
제22-21호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황호근	교장
제22-22호	부산	부산동고등학교	공현기	교장
제22-23호	부산	부산동성고등학교	이창수	교장
제22-24호	부산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황남훈	교장
제22-25호	부산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전건호	교장
제22-26호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김태기	교장
제22-27호	부산	성도고등학교	박봉호	교장
제22-28호	부산	용인고등학교	이상훈	교장

제22-29호	부산	이사벨중학교	정종규	교장
제22-30호	부산	항도중학교	김응도	교장
제22-31호	부산	혜화여자고등학교	류진숙	교장
제22-32호	대구	경구중학교	이교현	교장
제22-33호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	박헌석	교장
제22-34호	대구	경신고등학교	이병갑	교장
제22-35호	대구	정동고등학교	배종열	교장
제22-36호	인천	광성고등학교	권민식	교장
제22-37호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김주한	교장
제22-38호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김정미	교장
제22-39호	광주	정광고등학교	함병권	교장
제22-40호	광주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윤철한	교장
제22-41호	대전	대전대성여자중학교	김성순	교장
제22-42호	대전	대전한빛고등학교	안진호	교장
제22-43호	울산	성신고등학교	강인목	교장
제22-44호	울산	우신고등학교	김이식	교장
제22-45호	경기	경기관광고등학교	황병권	교장
제22-46호	경기	단월중학교	최지애	교장
제22-47호	경기	동광중학교	신현옥	교장
제22-48호	경기	백송고등학교	신진태	교장
제22-49호	경기	삼일상업고등학교	김재철	교장
제22-50호	경기	수동중학교	김재득	교장
제22-51호	경기	신한중학교	최병인	교장
제22-52호	경기	안양여자중학교	구재회	교장
제22-53호	경기	여주제일고등학교	서형택	교장
제22-54호	경기	진위고등학교	김영환	교장
제22-55호	경기	태원고등학교	오성룡	교장
제22-56호	경기	한광중학교	명재연	교장
제22-57호	경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박주현	교장
제22-58호	경기	홍익디자인고등학교	고연수	교장
제22-59호	강원	육민관고등학교	원춘희	교장

제22-60호	충북	신명중학교	김원중	교장
제22-61호	충북	청석고등학교	박종열	교장
제22-62호	충북	청안중학교	김성현	교장
제22-63호	충북	청주대성고등학교	김동식	교장
제22-64호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김영년	교장
제22-65호	충북	형석고등학교	이주호	교장
제22-66호	충남	공주북중학교	김학도	교장
제22-67호	충남	둔포중학교	박종인	교장
제22-68호	충남	서령중학교	유재현	교장
제22-69호	충남	임성중학교	이보현	교장
제22-70호	충남	천안계광중학교	김정태	교장
제22-71호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김갑식	교장
제22-72호	충남	호서중학교	손인영	교장
제22-73호	전북	군산대성중학교	이승훈	교장
제22-74호	전북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김종복	교장
제22-75호	전북	덕암중학교	고규태	교장
제22-76호	전북	배영고등학교	안종성	교장
제22-77호	전북	백산중학교	최수완	교장
제22-78호	전북	삼우중학교	조원석	교장
제22-79호	전북	완주고등학교	김형식	교장
제22-80호	전북	왕신여자고등학교	은희광	교장
제22-81호	전북	이리중학교	남상윤	교장
제22-82호	전북	익산고등학교	이평호	교장
제22-83호	전북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이정송	교장
제22-84호	전북	태인고등학교	은일상	교장
제22-85호	전북	호남고등학교	최범수	교장
제22-86호	전남	예당고등학교	정회삼	교장
제22-87호	경북	근화여자고등학교	서정태	교장
제22-88호	경북	동지여자고등학교	김명달	교장
제22-89호	경북	상주공업고등학교	김장경	교장
제22-90호	경북	성남여자중학교	오상종	교장

제22-91호	경북	성희여자고등학교	김진흥	교장
제22-92호	경북	안동중앙고등학교	임성준	교장
제22-93호	경북	영양여자고등학교	김옥순	교장
제22-94호	경북	오상중학교	도병복	교장
제22-95호	경북	이서고등학교	정영순	교장
제22-96호	경북	진성중학교	이규흥	교장
제22-97호	경남	경상고등학교	허형도	교장
제22-98호	경남	경해여자고등학교	정연회	교장
제22-99호	경남	대병중학교	박종기	교장
제22-100호	경남	대아중학교	이승우	교장
제22-101호	경남	마산제일고등학교	우정범	교장
제22-102호	경남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김주영	교장
제22-103호	경남	밀성고등학교	박평원	교장
제22-104호	경남	보광중학교	김지옥	교장
제22-105호	경남	사천여자고등학교	정정교	교장
제22-106호	경남	삼천포고등학교	김석근	교장
제22-107호	경남	삼현여자고등학교	손재호	교장
제22-108호	경남	삼현여자중학교	권해영	교장
제22-109호	경남	성지여자고등학교	민창홍	교장
제22-110호	경남	외포중학교	안병철	교장
제22-111호	경남	지리산고등학교	하미영	교장
제22-112호	경남	진해중앙고등학교	현상기	교장
제22-113호	경남	창원문성고등학교	전흥열	교장
제22-114호	경남	함안여자중학교	이동률	교장
제22-115호	경남	합천여자중학교	심희정	교장
제22-116호	제주	귀일중학교	안영수	교장
제22-117호	초등	은석초등학교	양형진	교장
제22-118호	초등	중대부속초등학교	안삼환	교장
제22-119호	초등	화랑초등학교	우명원	교장
제22-136호	부산	경혜여자고등학교	박용태	교장
제22-137호	경남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정한구	교장
제22-138호	경남	창선고등학교	최성기	교장

백록장(모범교직원상) 수상자

제22-120호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장상섭	교사
제22-121호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이우건	교사
제22-122호	대구	대구남산고등학교	김경숙	교사
제22-123호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송정아	교육행정주사
제22-124호	광주	광주동신중학교	이현호	행정부장
제22-125호	대전	대전대성고등학교	강양근	행정실장
제22-126호	울산	현대중학교	황순임	행정실장
제22-127호	경기	문정중학교	이선	교사
제22-128호	충북	일신여자고등학교	박형순	행정실장
제22-129호	충남	기민중학교	송용숙	교사
제22-130호	전북	전주덕진중학교	양두식	교감
제22-131호	경북	동지중학교	박정택	교사
제22-132호	경남	신창여자중학교	강현욱	교사
제22-133호	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	장은실	교사
제22-134호	초등	동북초등학교	박호서	교사

청록장(특별공로상) 수상자

제22-135호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김치문	교장

단체상

교무수첩 분야		심리검사 & OMR 분야	
순위	시·도명	순위	시·도명
1위	경북	1위	대전
2위	경기	2위	경북
3위	부산	3위	경남
4위	대구	4위	인천